5) 건축물에 대한 용도 · 건폐율 · 용적률 · 규모 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(변경)조서변경없음)
6)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조서(변경없음)

하남시 고시 제2016-136호

하남시 중점경관관리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고시

1. 「경관법」제7조에 따라 수립한 "2020년 하남시 경관계획"과 관련, 「경관법」제9조제1항 제4호에 따른 중점경관관리구역에 대하여 「토지이용규제기본법」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
2. 관련도서는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(토지이용계획 및 지형도면 고시부분)을 통해 열람이 가능하며, 하남시청 도시과(☎031-790-6372)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.

2016. 10. 6.
하 남 시 장

1. 중점경관관리구역 결정 조서
가. 중점경관관리구역 조서

구분	구역명	위치	면적(㎢)			최 초 결정일	비고
			기정	변경	변경후		
신설	하남대로 중점경관관리구역	덕풍동, 신장동, 천현동 일원	-	0.12	0.12	-	-
신설	미사대로 중점경관관리구역	망월동, 덕풍동, 신장동, 창우동 일원	-	0.46	0.46	-	-

나. 변경 결정 사유서

구분	시설명	면적(㎢)	변경사유
신설	하남대로 중점경관관리구역	0.12	2020년 하남시 경관계획 수립에 따른 중점경관관리구역 지정
신설	미사대로 중점경관관리구역	0.46	2020년 하남시 경관계획 수립에 따른 중점경관관리구역 지정

하남시 고시 제2016-139호

하남 지역현안사업2지구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변경(6차) 및 실시계획인가변경(5차) 고시

하남시고시 제2016-97 (2016.7.15.)호로 개발계획(5차 변경) 수립 고시된 하남 지역현안사업 2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대하여 「도시개발법」제4조 및 17조 규정에 따라 개발계획변경(6차) 및 실시계획변경(5차)을 인가하고, 같은법 제9조와 제1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조와 제40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
2016. 10. 6.
하 남 시 장

□ 하남 지역현안사업2지구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변경(6차)

1. 도시개발구역의 명칭 · 위치와 면적 : 변경없음
○ 명 칭 : 하남시 지역현안사업2지구 도시개발구역
○ 위 치 : 경기도 하남시 신장동 228번지 일원
○ 면 적 : 568,507㎡
2. 도시개발구역의 지정목적 및 도시개발사업의 시행기간 : 변경
가. 지정목적
○ 「2020년 수도권광역도시계획」에 지역현안사업2부지로 지정된 지역으로 하남시의 자족기능 확보와 고용창출 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물류유통 및 주택지 조성을 위해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코자 함
나. 시행기간
○ 2011년 4월 29일 ~ 2016년 9월 30일 (기정)
2011년 4월 29일 ~ 2017년 12월 31일 (변경)
※ 사유 : 지역현안사업2지구 부지조성 공사 중 일부 부지가 불법건축물 소송 및 보상 재결 등의 사유로 공사가 미완료되어 공사가 완료되는 시점으로 준공기한을 연장하고자함.